

서울시 교육지원국 설치에 따른 발언

경기도, 부산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울시의 창의교육과 같은 특정 교육분야를 직접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국의 명칭을 교육국으로 정해 놓은 경기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내용을 보더라도 특정 교육분야를 직접 담당하겠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 교육국의 분장사무를 보면, 교육에 대한 협력과 포괄적인 지원만을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즉, 교육협력 사업 및 교육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에도 행정자치국의 분장사무에 인적자원개발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으로만 되어 있을 뿐입니다.

창의교육은 교육청에서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창의교육 지원조례를 제정해 놓았을 뿐만 아니라, 분장 사무에 포함시킨 것은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창의인재 육성 등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의 분장사무 내용을 수정한다고 하더라도 창의교육 지원조례가 있는 한 서울시에서는 창의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 6월 30일로 끝난 제7대 의회에서 급하게 처리한 창의교육 지원 조례의 내용을 보면 본 의원이 주장하는 바를 쉽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등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창의교육을 보면,

창의교육이란,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모든 형태의 교육활동을 말한 대로 되어 있습니다.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해서 모든 형태의 교육활동을 서울시에서 다 하겠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르면 이미 학교교육에서 기본적으로 창의력 계발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참고

<교육기본법> 제9조 (학교교육) ③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전인적)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목은 물론 모든 교육 과정과 교육내용에 창의적인 요소는 반드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규정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기본법 제18조부터 제23조에는 특수교육, 영재교육, 유아교육, 직업교육, 과학기술교육, 정보화교육 등에 대한 실시 책임을 교육감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영역의 교육을 교육감의 책무로 정해놓고 있는데, 어떻게 서울시에서 창의인재육성 등의 업무만 따로 할 수 있겠습니까 ?

창의교육 지원 조례 제4조를 보면 창의교육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창의교육 기반구축, 창의교육 수행사업에 대한 분석 및 평가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제5조에는 창의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 운영하고, 창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를 양성하고 연수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창의교육 관련 기관과 공동사업을 하는 등 창의교육 사업을 직접 수행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의 명칭만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실시하는 창의교육을 지원한다는 것이지 직접 창의교육을 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창의교육 지원조례의 문제점에 대해 깊이 공감하시고, **이미 창의교육 지원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신** 바 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는 교육의 주무부서인 서울시교육청에서 담당해야 할 창의교육에 대한 역할을 서울시에서 창의아카데미를 설치하여 추진하겠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본 의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교육은 교육전문가인 교육청에 맡기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뽑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교육을 제대로 하도록 맡겨보자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서울시에서 교육을 직접 하겠다고 한다면 교육청은 왜 필요하며, 교육자치는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

시민들에게 바른 행정, 그리고 제대로된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집행부를 견제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6. 2 지방선거에서 보여준 시민들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우리의 의정활동이 제대로 이루어 질 때 1,000만 서울시민들이 우리를 믿고 지지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법이 살아 있는 한 교육자치는 존중되어야 하고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즉,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 교육지원국 분장사무 제3항의 『**창의 인재 육성 등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은 삭제되어야 하고,

서울시의 **창의교육 지원조례**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